

대만, 신선우유 및 유제품의 제품명 및 표시 규정 개정안 고시 (2026년 7월 1일 시행)



우유 및 유제품에 대한 제품명과 표시 규정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식품 선택 권리 보호

2024년 6월 5일, 대만 식품의약품국(TFDA)는 「신선우유, 멸균우유, 향미유음료 및 분유의 품명 및 표시 규정」 개정 초안을 발표함. 이번 개정은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소비자의 혼동을 줄이고, 규정된 라벨링을 통해 제품 정보를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함. 개정안 중 2025년 7월 1일 '제3조의 제품 명칭 및 표시 규정'이 우선 시행되며, 공식적으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

1. **배경** : 대만 보건복지부는 「신선우유, 멸균우유, 향미유음료 및 분유의 품명 및 표시 규정」 개정 초안을 발표함. 이 개정안은 1975년 8월 4일에 발표된 「신선 우유, 탈지유, 연유, 가당 전지 연유, 가당 탈지 연유, 크림, 향미유, 발효유, 합성유 및 기타 액상 유제품에 유통기한 및 보관 조건 표시 규정」을 통합하고, 영아용 조제분유 보충식품 및 특수의료용 조제분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. 유제품에 대한 정의 수정, 명칭 및 표시 규정 수정, 라벨링 규격 수정 등 유제품 관련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음

2. 주요 내용

조항	개정 전	개정 후
2조 용어의 정의	우유 및 유제품의 종류를 생우유, 멸균우유, 향미우유, 향미유음료, 우유음료, 멸균 우유음료, 분유, 변조 분유로 나누고 각각의 정의를 기재함	우유 및 유제품의 종류를 생우유, 강화생우유, 멸균우유, 영양강화우유, 향미우유, 멸균 향미우유, 우유음료, 멸균 우유음료, 분유, 강화분유, 조제분유로 나누고 각각의 정의를 기재함
3조 제품 명칭 및 표시 규정	제품 유형에 맞는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거나 외부 포장에 중국어로 알아보기 쉽게 기재하여야 함	- 제품 유형에 맞는 명칭을 제품명에 포함하거나 외부 포장에 중국어로 알아보기 쉽게 기재하여야 함 (‘보관기간 연장’의 추가) 생우유 또는 강화생우유 중 청결한 환경에서 무균 포장하여 유통기한이 30일 이상인 제품의 경우 ‘유통기한 연장 우유, 장기보존 신선유, ESL 신선유’라 함

조항	개정 전	개정 후
4조 성분 조정을 거친 제품의 의무 표시	(신규 조항)	- 유지방을 조정한 경우 “유지방 조정” 또는 이에 준하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(ex. 홀(Whole), 저지방(Low-fat), 탈지(Skim)) - 유당을 조정한 경우 “유당 조정” 또는 경우에 따라 “락토 프리” 문구 또는 이에 준하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(ex. Low Lactose, Lactose-Free) - 영양을 강화한 경우 제품명 또는 포장에 “강화(Fortified)” 문구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
5조 제품의 멸균 방식 표시	멸균 우유, 멸균 향미우유 및 멸균 우유음료의 경우 멸균 방법을 포장에 중국어로 표기하여야 함	유통기한 연장 및 멸균 우유와 우유음료 제품의 경우 멸균 방법을 포장에 중국어로 표기하여야 함
6조 유통 기한 및 조건 표시	(신규 조항)	- 생우유, 강화생우유, 멸균우유, 멸균 강화우유, 향미우유, 멸균 우유음료, 우유음료 제품의 경우 포장에 중국어로 유통기한과 보관 조건을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함 (액상 유제품의 경우, 부피에 따라 글씨 크기를 조정해야 함)
7조 우유 분말 함량 표시	상업적으로 판매되는 조제 분유 제품의 경우 포장에 분유 함유율을 중국어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	조제 분유 제품의 경우 포장에 분유 함유율을 중국어로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
8조 라벨링 글자 크기	제품 명칭 및 표시 규정과 우유 분말 함량 표시를 포장에 표기할 때 글꼴 크기는 4mm 이상이어야 하며 글꼴 색상은 포장 배경과 달라야 함	- 제3조, 제4조,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을 포장에 표기할 때, 제품의 용량에 따라 글꼴 길이와 너비를 달리함 (상세 규정 원문) - 글꼴 크기는 최소 4mm이어야 하며, 글꼴 색상은 포장 배경의 색과 현저히 달라야 함 - 성분 조정을 거친 표시 제품은 의무적으로 관련 문구 표시 (유지방 조정, 유당 조정 등)
9조 기타	(신규 조항)	제품명의 표시가 본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, 허위, 과장,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 본 법에 따라 처리함

대만으로 수출하는 우유 및 유제품의 포장에 중국어로 유통기한과 보관 조건 표기 필수

대만은 한국의 유제품 수출국 상위 5개 국가 중 하나임. 2023년 對 대만 유제품 수출 규모는 약 193만 6천 달러 (한화 약 26억 7,175만 원)이었으며, 2024년 4월까지의 수출 규모는 약 42만 2천 달러(한화 약 5억 8,237만 원)를 기록함. **대만으로 유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변경된 우유 및 유제품 명칭 정의와 제품 표시 규정 등을 확인하여 수출에 불이익이 없도록 반영하여야 함.** 이번 **대만의 우유 및 유제품 규정 변경**은 관리 대상을 확대하고 품명과 표시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 임. **영아용 조제분유, 영아용 조제 분유 보충식품 및 특수의료용도 영아용 조제분유를 규범 대상에 포함한 점에 유의해야 함.** 또한, 개정 초안임으로 확정안이 발표될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

출처

대만 식품의약품안전처, 預告修正「鮮乳保久乳調味乳乳飲品及乳粉品名及標示規定」草案, 2024.06.05